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제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3년 7월 24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6월 17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3년 7월 14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1993년 7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박한규)

가. 제안 이유

-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 국가 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
- 국가 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조세 운영의 청평을 기하고자 한.

나. 주요 골자

-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을 “국가 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
- 면제 대상 조정 및 면제 신청서 제출처를 명확하게 지정
 - 상이등급 2급 12개 분류중 7개 분류에 대해 면제하던 것을 전부 면제
 - 면제신청서 제출처를 “구청장”에서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로 명확하게 지정
- 수혜자를 “상이군경”에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 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

3.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하므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우리구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집단 거주지는 없으나 다른 구와 형평을 같이하고 2,000CC이하의 보철용 승용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 부산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수혜대상에 종전의 군, 경에서 민간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에도 적합하고, 지방세법 제7조 및 부산직할시 남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도 적정, 적법하므로 이 조례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당연시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임종하 위원	세무 2과장 박 한 규	<input type="radio"/> 민간인 관계의 범위는?	<input type="radio"/>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15가지로 순국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 사망자, 사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 상이자 등으로 상이 정도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태희 위원	세무2과장 박한규	<input checked="" type="radio"/> 토지나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input checked="" type="radio"/> 신체 장애자로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만 해당 됨. <input checked="" type="radio"/> 자활촌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는 적용을 받지 못함.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